

1. 법의 보호대상 확대(법 제5조 관련)

✓ 개정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대상을 「(종전) 근로자 → (개정)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 개정이유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사각지대 발생
→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보호 규정 마련

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 제77조 관련)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통령령(시행령 제67조)으로 정하는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 모집원	▪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직종(9개)과 동일함.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법 제77조 제1항)

① 건설기계 운전자(27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1. 불도저	2. 굴착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Batching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향타 및 향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구 분	내 용
공통사항	<p>기상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천 후 및 강풍 등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 ▪ 순간풍속 10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또는 수리·점검 중지 ▪ 순간풍속 15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p>작업계획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작업 이행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지시
	<p>운전·탑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중을 건 상태 또는 화물 적재 상태에서 운전위치 이탈금지, 갑작스러운 주행·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등 ▪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방지 조치 시 근로자 탑승 가능 (단,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탑승 제한) ▪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승차석 외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p>사용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 ▪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 양중기의 적재하중 내 사용
	<p>방호조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유도자 배치 및 갓길 붕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제한 (단,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시 출입기능) ▪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운반기계, 굴착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 적재장소 출입 방법을 근로자에게 주지

양중기 (타워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등)	적정하중 표시	■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 부착
	방호장치 고정	■ 구부하방지장치, 권리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등 작업 전 작동상태 확인
	크레인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흑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 운반 시 해지장치 사용 ■ 지브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시 지브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
	크레인 작업 시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 금지 ■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운반 ■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 금지 ■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 통제 ■ 인양할 화물을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동 금지(단, 신호수에 의하여 작업하는 경우 제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지게차 등)	화물 적재 시 조치	■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고 적재 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
	좌석 안전띠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시
차량계 건설기계 (굴삭기, 덤프트럭, 불도저 등)	안전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조등 구비 ■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 장소에서는 견고한 헤드가드 구비
	좌석 안전띠	■ 차량계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시
항타기 및 항발기	무너짐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깔판, 깔목 등을 사용 ■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내력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보강 ■ 각부나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말뚝 또는 쌔기 등을 사용하여 고정 ■ 버팀대, 버팀줄, 평형주로 안정시키는 경우 각각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사용 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고인 경우 하중을 걸어서는 안 됨. ■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경우 장비를 사용하여 제동하는 등 확실하게 정지

② 그 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운전자 제외)

적용대상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기준 관련 법령
■ 보험설계사, 우체국 보험 모집원 ■ 학습지교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시설 구비 ■ 공기정화설비 가동, 사무실 청결관리 등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 책상·의자의 높낮이 조절,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대응지침 제공 및 관련교육 실시
■ 골프장 캐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시설, 세척시설, 구급용구 등의 구비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금지 ■ 운전 시작 전 근로자 배지·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확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 유도자 배지, 부동침하 방지 등 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 금지 ■ 꽂음접속기 설치·사용 시 서로 다른 전압의 접속기가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등 ■ 미끄럼방지 신발 착용 확인 및 지시 ■ 고객 폭언 등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 나.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다. 휴게시간의 연장 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마.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등 제출 ※ 단, 나목부터 마목까지 조치는 골프장 캐디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퀵서비스 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차용 안전모 착용 지시 ■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 불량 이륜자동차 탑승 제한 지시 ■ 업무용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

■ 택배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장에서 넘어짐 또는 미끄러짐 방지, 청결 유지, 적정 조도 유지 등 안전한 통로와 계단의 설치, 안전난간 설치, 비상구 설치, 통로 설치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위험물질 보관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해당작업(장)의 지형·지반·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의 작업 종사 금지 운전시작 전 근로자 배치·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확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제한속도 설정 및 운전자가 준수하도록 할 것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 이탈 시 원동기 정지 등 필요한 사항 준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 시 기계유도자 배치, 근로자 접촉 방지, 화물적재 시 안전조치 등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탈 및 역주행 방지 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 사용하여야 함. 화물취급 작업 시 섬유로프 점검, 하역작업장의 안전조치 등 실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조치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
■ 대리운전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법 제77조 제2항)
① 교육시간(시행규칙 [별표4])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② 교육내용(시행규칙 [별표5])
교육내용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별칙규정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법 제7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법 제7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미실시(1인당)	10	20	50
	특별교육 미실시(1인당)	50	100	150

○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교육의 구분

구 분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교육
법적 근거	법 제29조 제3항	법 제77조 제2항
교육대상	근로자	사업자(개인)

※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구분하면 된다. 즉, 사용종속관계가 있을 경우 근로자이다.

ex) 지게차 운전자 : 근로자(법 제29조 제3항 특별교육 실시) / 건설기계 운전자(법 제77조 제2항 특별교육 실시)

1.2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 보호(법 제78조 관련)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배달앱 등)를 통하여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법 제78조)

- 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가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행 할 수 있는 면허 및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
 - ②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 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
- ※ 운전자의 준수사항 : 운전자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등
- ③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의 수거·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 안전보건규칙

- ① 보호구의 지급·관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 : 승차용 안전모
- ② 탑승의 제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11항)
 - 사업주는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 벌칙규정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2. 산업재해 예방 책임주체 확대

2.1 대표이사(법 제14조 관련) <21.1.1. 시행>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시행령 제13조)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립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대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세부내용

세부내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 벌칙규정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2.2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법 제79조 관련)

가맹점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였음.

- ### ○ 대상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의 정보공개서 상 업종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
- 대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 [중분류 : 한식, 중식, 일식, 분식, 치킨, 피자, 커피, 주점 등]
 - 대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 [ex)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 세부내용

- ①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 · 시행(시행규칙 제96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 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 가맹점 내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가맹점 안전보건매뉴얼
- 가맹본부의 프로그램 운영 조직의 구성, 역할 및 가맹점사 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체계
- 가맹점의 재해 발생에 대비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조치사항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한다.

-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 · 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시행규칙 제97조)

○ 벌칙규정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법 제7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안전 ·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 · 시행하지 않거나 가맹사업자에게 안전 ·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500	2,000	3,000

3. 위험 기계 · 기구 등의 안전 강화

3.1 지게차 안전 강화(법 제80조 관련) <21.1.16. 시행>

사업장에서 중량물 운반목적으로 사용하는 지게차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 설치와 운전자 교육이수 신설함.

○ 지게차 안전장치 설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실시(후진경보기 · 경광등 및 후방감지기 설치)

○ 지게차 운전자 교육이수 신설(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구 분	종 전	개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되는 지게차만 해당 -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적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 지게차 추가 -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 포함
자 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취득 - 3톤 이상 :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적성검사 → 면허 - 3톤 미만 : 1종 면허+소형건설기계조종과정 이수 → 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보유 ▪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

3.2 고소작업대 안전 강화(법 제81조 관련)

기계 · 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법 제81조) 조항이 신설되고, 지게차 · 리프트 등 기계 · 기구 · 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품목에 재해율이 높은 고소작업대가 추가됨(23종류 → 24종류).

3.3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 · 안전검사 품목 수정

구 분	대 상
[법 제84조] 안전인증 (30품목)	기계 · 기구 (9품목)
	방호장치 (9품목)
	보호구 (12품목)

1. 프레스 2. 전단기 및 절곡기 3. 크레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롤러기 7. 사출성형기 8. 고소작업대 9. 곤돌라 **10. 기계톱(삭제)**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6.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7. 방폭구조 전기기계 · 기구 및 부품 8. 가설기자재 **9.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신설)**

1. 안전모(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2. 안전화 3. 안전장갑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전동식 호흡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보안경(차광 및 비산)

[법 제89조] 자율안전 확인신고 (20품목)	기계 · 기구 (10품목)	물 위험방지용) 11. 용접용 보안면 12.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1.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2. 산업용 로봇 3. 훈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가공용 기계(파쇄 · 절단 · 훈합 · 제면기만 해당) 6.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 · 형삭기, 밀링만 해당) 9.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10. 인쇄기 11. 기압조절실(삭제)
	방호장치 (7품목)	1.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3. 룰러기 급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5.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대파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7. 가설기자재(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 제외) 8.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삭제)
	보호구 (3품목)	1. 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안전모 제외) 2. 보안경(안전인증 대상 보안경 제외) 3. 보안면(안전인증 대상 보안면 제외) 4. 잠수기(삭제)
[법 제93조] 안전검사 (13품목)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리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은 제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9. 룰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종전)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삭제)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삭제)

4. 기타사항

4.1 위험성평가 관련 근로자 참여(법 제36조 관련)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함.

- ①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 ②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 ③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4.2 사업주 등의 의무이행 강화(법 제167조, 제173조, 제174조 관련)

- 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불이행하여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
- ②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액 상향(1억원 이하→10억원 이하)
- ③ 유죄의 판결(선고유예 제외)을 받은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 가능

4.3 화재감시자 배치 확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 · 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 · 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함.

- ①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②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 벽 ·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4.4 밀폐공간 안전 강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제641조 관련)

- 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시기를 명확화 : 「(종전) 미리 → (개정)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포함)하기 전」으로 수정
- ②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대상 추가 : 「(종전) 작업근로자 → (개정) 작업근로자(제623조에 따른 감시인 포함)」으로 수정

* 수강명령(受講命令) :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 시간 동안 강의, 체험 학습, 심신 훈련 따위의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

** 병과(併科) :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

결 재				

안전보건교육일지

교육일시	년 월 일	~	(시간)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시행 규칙 제26조 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별표5 제1호 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5 제1호 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대상 인원			【교육 참석자 명단】 참조
	참석 인원			
교육제목	2020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①			
교육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의 보호대상 확대 2. 산업재해 예방 책임주체 확대 3. 위험 기계 · 기구 등의 안전 강화 4. 기타사항 			
교육장소 및 실시자	교육장소	직명	성명	

〈 교육 참석자 명단 〉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